역곡역 일신휴먼하임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분양안내 및 홍보 사무실 등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분양안내 및 홍보 사무실은 직접 방문으로 운영됩니다.(운영시간 10:00~18:00)

※ 방문예약은 전화 032- 345 - 3888 로 합니다.

- 분양안내 및 홍보 사무실을 방문할 때,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비접촉체온계 체온측정 거부자, 손 소독제 미사용자

※ 체온계 측정시 37.5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 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분양안내 및 홍보사무소 방문가능 기간 및 시간,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2.2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천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8.)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광한재건축조합.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

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추유무, 분양권소유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1순위 해당지역 (부천시1년이상거주자)	일반1순위 기타지역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
일정	2021.01.07.(목)	2021.01.08.(금)	2021.01.11.(월)	2021.01.15.(금)	2021.01.26.(화) ~2021.01.28.(목)
방법	인터넷청약 (08:00 ~ 17:30)	인터넷청약 (08:00 ~ 17:30)	인터넷청약 (08:00~ 17:30)	개별조회 (청약홈 로그인 후 조회가능)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당사분양사무실 계약체결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81 *계약자 외 일반인 입장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4외 4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20층 2개동 총108세대중 일반공급 27세대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조합원공급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입주월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조합원	계		
민영 주택	2020001429	01	041.0458A	41A	041.0458	16.1539	57.1997	33.1966	90.3963	23.0294	38	25	25	11	2022. 12월 예정 (추후 통보)
		02	049.0474B	49B	049.0474	17.7825	66.8299	36.6682	106.4981	26.9067	38	30	30	8	
		03	049.2365C	49C	049.2365	28.2784	67.5149	39.8211	107.3360	27.1825	16	12	12	4	
		04	052.0405D	52D	052.0405	19.1501	71.1906	42.0889	113.2795	28.6624	16	12	12	4	
	합 계										108	79	79	27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 0.3025 또는 공급면적 (㎡) ÷ 3.3057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부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원)

주택형	약식 표기	세대 수	동호별	층 구분	세대 수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중도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3회	중도금 4회	중도금 5회	
									계약시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입주 지정일
										2021.1	2021.4	2021.7	2021.10	2022.1	
041.0458 A	41A	11	101동 1,2호	4	1	85,314,500	165,610,500	250,925,000	25,092,500	25,092,500	25,092,500	25,092,500	25,092,500	25,092,500	100,370,000
				6	1	87,074,000	169,026,000	256,100,000	25,610,000	25,610,000	25,610,000	25,610,000	25,610,000	25,610,000	102,440,000
				7	1	87,856,000	170,544,000	258,400,000	25,840,000	25,840,000	25,840,000	25,840,000	25,840,000	25,840,000	103,360,000
				8	1	88,247,000	171,303,000	259,550,000	25,955,000	25,955,000	25,955,000	25,955,000	25,955,000	25,955,000	103,820,000
				13,14	3	88,638,000	172,062,000	260,700,000	26,070,000	26,070,000	26,070,000	26,070,000	26,070,000	26,070,000	104,280,000
				17,20	3	88,833,500	172,441,500	261,275,000	26,127,500	26,127,500	26,127,500	26,127,500	26,127,500	26,127,500	104,510,000
				18	1	89,029,000	172,821,000	261,850,000	26,185,000	26,185,000	26,185,000	26,185,000	26,185,000	26,185,000	104,740,000
049.0474 B	49B	8	101동 3,4호	2	2	101,592,000	197,208,000	298,80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119,520,000
				8	1	112,502,600	218,387,400	330,890,000	33,089,000	33,089,000	33,089,000	33,089,000	33,089,000	33,089,000	132,356,000
				10,11 14,20	5	114,848,600	222,941,400	337,790,000	33,779,000	33,779,000	33,779,000	33,779,000	33,779,000	33,779,000	135,116,000
049.2365 C	49C	4	102동 1,2호	2	2	116,028,740	225,232,260	341,261,000	34,126,100	34,126,100	34,126,100	34,126,100	34,126,100	34,126,100	136,504,400
				9	2	117,944,980	228,952,020	346,897,000	34,689,700	34,689,700	34,689,700	34,689,700	34,689,700	34,689,700	138,758,800
052.0405 D	52D	4	102동 3,4호	2	2	122,341,520	237,486,480	359,828,000	35,982,800	35,982,800	35,982,800	35,982,800	35,982,800	35,982,800	143,931,200
				9	2	124,362,140	241,408,860	365,771,000	36,577,100	36,577,100	36,577,100	36,577,100	36,577,100	36,577,100	146,308,4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전산으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일부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별 대지지분은 주택형 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3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Ⅱ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

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소유한 자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가점제 75% 적용, 추첨제 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가점제 개요 (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당첨이 취소된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 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 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 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선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일반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 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Ⅲ 신청일정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1.01.07.(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2021.01.08.(금). (08:00~17:30)		
	2순위	2021.01.11.(월). (08:00~17:30)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 공급유형,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분양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3단계 적용시 당첨자 발표이후 적격심사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등의 업무는 우편접수 또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서류접수를 실시할 수 도 있으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분들게 개별안내를 통해 일정과 실시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격검증서류제출 및 계약일정이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2021.01.16.(토)~ 2021.01.18.(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및 자격검증 및 서류제출에 따른 견본주택 내방시에도 사전예약 신청 필수이며 사전예약 신청 일정을
제출장소	. 분양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81, 지층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 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 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홈페이지 공지예정) .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세류제출 기간이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주택형 및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참여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표1>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부기간(10년이상)을 명시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상 청약당첨자가 미혼이거나 ,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가점제당첨자 및 가점제당첨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피부양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가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인장	대리인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등) .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일	계약체결
일반공급	일시 2021.01.15.(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2021.01.16.(토)~ 2021. 01. 18. (월)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부천시경인로481, 지층	• 일시 - 2021. 01. 26. (화)~ 2021. 01. 28. (목)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부천시경인로481, 지층 문의전화:032-345-3888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소나 해당은행 창구 (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광한재건축조합.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인터넷		- 2021년 01월15일 금요일 ~2021년 01월 24일 일요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1.15.(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약 가점 산정표 - 가점제 당첨자
		○	무주택 서약서 - 무주택 해당자
	○		계약자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 표시] *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본인발급기준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대리 계약 시 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2통,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추가해당자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일 경우)
		○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1부(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 혼인관계증명서 1부(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 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애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1107-021-146396	광한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 : 101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101801홍길동"이라고 기재]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을 따릅니다.

V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타입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입주지정일
41 (A)	6,760,000	676,000	6,084,000
49 (B)	8,190,000	819,000	7,371,000
49 (C)	11,440,000	1,144,000	10,296,000
52 (D)	13,910,000	1,391,000	12,519,000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요망.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시 분양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분양사무실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146396	광한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흠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바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동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흠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흠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흠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당해 세대의 비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의 부족한 열관류율(단열)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비확장 부위인 벽, 천장, 바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및 인접세대의 열관류율(단열) 부족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위치	판매가	납부일정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 지정일
41 (A)	선택1	거실, 안방	3,100,000	310,000	2,790,000
49 (B)	선택1	거실, 안방	3,100,000	310,000	2,790,000
	선택2	거실, 안방, 침실2	4,200,000	420,000	3,780,000
49 (C)	선택1	거실, 안방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2	거실, 안방, 침실2	4,500,000	450,000	4,050,000
	선택3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6,000,000	600,000	5,400,000
52 (D)	선택1	거실, 안방	3,500,000	350,000	3,150,000
	선택2	거실, 안방, 침실2	5,000,000	500,000	4,500,000
	선택3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6,200,000	620,000	5,580,000
	선택4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알파룸	7,400,000	740,000	6,660,000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146396	광한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아래의 계좌는 시스템에어컨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요망.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시 분양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분양사무실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현관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형식	판매가	납부일정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지정일
41 (A)	3연동	1,680,000	168,000	1,512,000
49 (B)	3연동	1,680,000	168,000	1,512,000
49 (C)	3연동	1,680,000	168,000	1,512,000
52 (D)	3연동	1,680,000	168,000	1,512,000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현관중문	광주은행	1107-021-146396	광한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아래의 계좌는 현관중문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요망.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시 분양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분양사무실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사무실에 제출[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 선택품목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금 정액제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분양사무실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관리(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이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질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질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매립박스(거실, 침실1), 일반에어컨용 컨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일반에어컨 배관용 매립박스가 거실(스탠드형)과 안방(벽걸이형)에만 기본으로 제공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역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분양사무실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VI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계약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 (㎡)]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 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5%)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는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및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이용을 위한 출입구, 내/외부계단, 승강기 등에 인접한 세대는 입주민의 이동소음 및 승강기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아파트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생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정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일반사항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구역의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레벨 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동출입구 계획, 코어 위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주동 출입구 계획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실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 층 직배기로 계획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 블록 등의 사항은 본공사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로고,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 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의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주변 대지 및 생활편의 시설, 도로의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용도, 현황, 레벨, 새로운 도로 개설 등 개발 여건 변화로 본 단지 경계부에 설치된 건축 및 토목 옹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단지 레벨, 출입구 추가 설치, 우.오수 관로의 위치 및 규격, 지하주차장 내 그릴 창, 부대복리시설 등은 실시공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 단지내 조경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당해 동 또는 인접한 동 및 조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지하철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동은 근린생활시설 운영 및 이용자에 의하여 소음, 냄새, 빛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주/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근접해있는 세대는 청약 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의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소음, 악취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구조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 도로 또는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미관저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소방활동을 위한 비상차량 정차공간이 각 동 주변에 설치되며,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리수거함의 개수는 추후 인허가 절차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쉼터, 주민휴게공간, 광장에 접한 세대 및 동에서는 이 시설물의 사용자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101동 필로티에 설치되는 분리수거함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각 동 주변에 분포된 자전거보관대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 외부색상 디자인은 부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한 색상을 기준으로 본 공사시 외부색상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시공되며, 이에 따라 외부색상 디자인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2.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 복리시설은 가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의 이동시 E/V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동되는 경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상주차장, 차량통행로, 비상차량로, 주민휴게공간, 분리수거함 등으로 인해 각 시설의 인접한 아파트 주동에 빛, 소음, 분진, 냄새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본공사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 난간대의 안전성 확보 관계로 본공사시 재료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외부시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D.A(환기용, 제연용 등)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정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환기 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환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PD, ST, EPS, TPS실 등 조적, 콘크리트, 건식벽체 내측 면에는 별도의 미장 및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부 조적벽체는 공사 중 비내력벽 콘크리트 벽채 및 건식 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근린생활시설-아파트 주차장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을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 유효높이는 2.4m, 지하주차장 유효 천장고(주차통로 부분)는 2.3m, 주차램프통로폭은 7.0m(양방)로 설계되었으며, 시공시 유효 층고 및 유효 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부대복리시설 실외기 설치구간 안내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단위세대 및 마감제

* 시공사에서 지정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 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서 체결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공간의 루바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사의 도어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부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당해 세대의 비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의 부족한 열관류율(단열)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비확장 세대의 비확장 부위인 벽, 천장, 바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창호, 주방기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피난공간 (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의 하부에는 부식 등의 하자 방지를 위하여 마루(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세대환기 장비는 천장에 노출로 시공됩니다.
* 신발장 등 가구 하부에는 타일 등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및 경량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1-3층 일부 석재 및 뿜칠 마감 시공 예정이며,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스위치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측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코어와 세대가 접하여 있는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이 설치된 대피공간 문은 철제 방화문 으로 시공됩니다.
* 천장 내부 배관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세대별 골조 상이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의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인접세대에 의해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므로, 배기시설로 인한 층간, 세대간 인접세대에 의한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에 바닥 난방 효율이 다른 층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8. 명칭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9. 기타

* 공동주택 (아파트)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와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공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단지 및 단지 주변 환경에 따른 배수 관계로 인해 단지 내에 공용 배수 관로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공요 배수관로의 삭제, 유지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설치된 시설물 이관 이후에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Ⅶ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실 등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비고
회사명	(주)티에스엔지니어링	(주)감인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27,593,400	132,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광한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일신건영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41, 4층 (송내동, 국일빌딩)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의정부동)
사업자등록번호	844-81-00957	127-81-61112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81, 지층

▣ 분양문의 : ☎ 032-345-3888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